

지방교부세 혁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

대통령님께서 지방교부세 배정기준 개선을 지시(’05.12, ’06.2, ’06.6) 하심에 따라 조치사항, 교부세 혁신방안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립니다

< 요약 >

1.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방안

- 교부세 수요산정시 **사회복지·문화수요** 현행 **31% → 36%**로 확대(지역개발비는 36%→31%로 축소)
-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위해 **지표 다양화**와 **상대적 기준 반영**
- 모·부자 가정수, 결혼이민자 수, 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 등

2. 분권·특별교부세 제도 개선방안

- **아동복지**와 **공공도서관** 분야 분권교부세 **지원** 확대, 사회복지 투자 확대를 위한 특별교부세 **인센티브 강화**

3. 지자체의 교육투자 확대방안

- **지자체**의 **교육지원사업 시행** 또는 **보조근거 마련**, 지자체의 교육투자 실적 인센티브에 반영 등

1. 추진배경 및 경위

- 대통령님께서 노인수시설 등이 많은 지역에 **교부세 증액배정** (’05.12.6 당노인위 행사) 및 동 추진상황 보고(’05.12.7 광주방문) 지시
- ’06.1 지방교부세배분시 **노인·장애인 복지분야**에 분권교부세를 증액하고, 고령화지역에 보통교부세를 증액배정하였으나
<참고 1> 노인시설 등에 대한 ’06년 교부세 증액배정 세부내용
- 분권교부세의 경우, **아동급식**과 **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** 등 기타 분야 **재원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**하여 추가 제도개선 검토

’05년	노인복지 1,447억(17.1%)	장애인복지 1,821억(21.6%)	그 밖의 복지 2,039억(24.1%)	기타 수요 3,146억(37.2%)
’06년	2,220억 (22.1%)	2,312억 (23.1%)	2,145억 (21.4%)	3,347억 (33.4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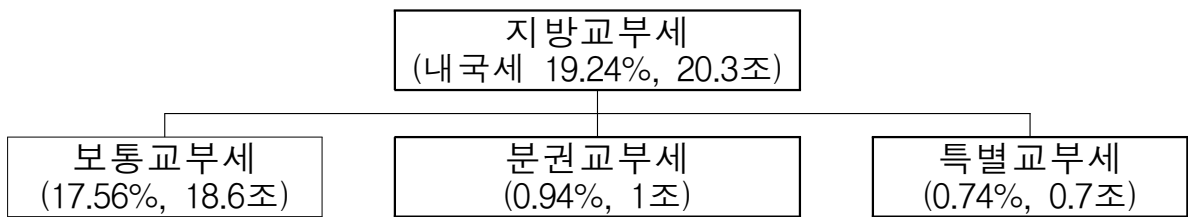
※ 그 밖의 복지비는 아동복지·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등을 지원

(’06.10.30, 교부세혁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, 사회정책비서관실)

- 대통령님께서서 **사회문화·복지지표가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교부세 배정기준 개편** 지시(’06.2.27, 공공도서관 정책보고회의)
 - ’06.3.9, 사회수석 주재 관계관 회의개최,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 마련토록 결정
 - ’06.6.1, 행자부 업무보고시 교부세혁신방안 대통령님께 보고
 - 보통교부세 사회복지문화수요 비중을 31%→34%로 확대, 분권 교부세를 사회복지교부세로 확대개편(내국세 0.94%→1.88%) 등
- 대통령님께서서 **사회복지교부세 신설과 교부세 배분기준 재검증, 지자체의 교육투자 확대**방안 마련 지시(’06.6.1 행자부 업무보고)
 - ’06.7.21, 경제비서관 주재 1급(행자, 복지, 기예 등)회의 개최, 교부세 복지·문화수요 비중 확대와 상대적 기준 반영 등 합의
 - ’06.7.27, 8.16, 관계관(사회정책,행자,교육,기예) TF회의, 8.25 국조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 개최, 지자체 교육투자 확대방안 합의
 - ’06.9 ~ , 행자·교육부 추진계획 수립, 관련법령 개정추진

2. 지방교부세혁신 및 지자체 교육투자 확대방안

① 지방교부세 개요



- **보통교부세** :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

$$\boxed{\text{기준재정수요액}} - \boxed{\text{기준재정수입액}} = \boxed{\text{재정부족액}} \quad \text{≒} \quad \boxed{\text{보통교부세}}$$

기초수요±보정수요 ±인센티브 보통세의 80%±보정수입 ±인센티브 조정률 적용 ('06년 85.9%)

- **특별교부세** : 공공시설 설치, 재해대책 등 특별수요에 대해 교부

(’06.10.30, 교부세혁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, 사회정책비서관실)

- **분권교부세** : ’05년 국고보조금 이양사업(149개 사업)에 대한 재정 수요 보전을 위해 교부

② **보통교부세 배정방법 개선방안**

□ **보통교부세 수요산정시 복지·문화분야 비중 확대**

- 지역개발수요를 현 36% → 31%로 축소, 사회복지·문화수요를 현 31%(’06년 14.2조) → 36%(’07년 17조)로 확대
⇒ 사회복지·문화분야 투자비중이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 더 많이 배분

□ **지표 다양화와 상대적 기준 반영을 통해 지역간 복지격차 해소**

- 모·부자가정, 결혼이민자, 소년·소녀가장 등을 교부세 산정항목에 포함(사회균형수요 신설)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확대
- 초고령 지자체(65세이상 인구 20%이상)에 대한 지원확대
- 장애인·기초생활수급권자·아동복지 비율 등 상대적 기준 반영
⇒ 복지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자체에 교부세 더 많이 배분

□ **보건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보장 인건비 반영**

- 총액인건비제 도입(’07.1.1시행)에 따른 인건비 측정단위를 지방 공무원 정원 →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 수로 변경
⇒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력수요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반영
※ ’07년 총액인건비 산정시 보건복지인력 2,154명을 추가하여 반영예정

③ **분권·특별교부세 배정방법 개선방안**

□ **아동복지와 문화 분야에 분권교부세 지원 확대**

- 분권교부세 산정항목에 아동복지비와 공공도서관비를 신설
※ 분권교부세는 ’10.1 폐지되므로 지방이양된 국고보조금사업의 중앙환원 등 기타 제도개선은 ’08년 이후 검토(’06.7 사회정책비서관주재 TF회의 결과)

□ **사회복지 투자분야에 특별교부세 지원 강화**

- 지자체 사회복지예산비율을 반영하여 특별교부세 재정인센티브를 차등 지원, 사회복지사업에 특별교부세 우선지원

4 지자체의 교육투자 확대방안

□ 지자체의 교육재정지원체계 마련

- 시도의 교육지원사업 직접시행 또는 보조 근거 마련
- 현재 시군구에서는 교육지원사업 보조만 가능하나 직접시행 근거 마련하고, 인건비 미충당 시군구의 교육보조제한 규정 삭제
- ※ 교육부소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개정사항
- ※ 교육부에서는 기예처와 협의(’06.8), 지방교육교부세(행자부 지방교부세와 별개)를 현 내국세의 19.4% → ’08년 19.8% → ’09년 19.9% → ’10년 20% 인상추진(’07~’10 연평균 9,578억원 증가예상)

□ 지자체의 교육투자 확대시 행자부·교육부의 특별교부세 지원

- 지자체에서 교육사업투자시 교육부에서 이에 대응하여 지방교육 특별교부세를 지원, 행자부에서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에 반영

3. 향후 추진계획

□ 추진일정

- 보통·분권교부세 배정방법 개선(행자부)
 - 12월초 지방교부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, ’07.1 시행
- 지자체의 교육투자 확대 방안(교육부)
 - 금년 정기국회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, 12월중 시군구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(대통령령) 개정, ’07년 시행

□ 홍보계획

- ’07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이 완료되고, 예산이 확정되어 지자체에 통보되는 ’06.12 또는 ’07.1 브리핑 등 홍보실시(행자부)
- 지자체의 ’07년 예산에 사회복지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관계자회의에서 사회복지 비중상향조정 계획을 사전 홍보